

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6. 7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지방의회의 시의원 수가 명
시되지 않아 2명으로 수정코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 제3항 제5호 수정
 - 「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시의원」을 「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」으로 수정

3. 참고사항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
- 긴급지원담당공무원지정·보고 및 관련조례 제·개정 표준안
(보건복지부)
 - 도 사회노인복지과 - 3979('06. 2. 24)호와 관련임

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5.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1.- 4(생략) <u>5.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시의원</u>	제3조(구성) ①(원안과 같음) ②(원안과 같음) ③(원안과 같음) 1.- 4(원안과 같음) <u>5.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</u>

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긴급지원연장 결정
2.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
3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
4.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서 사회보장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자
2. 사회보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중 사회복지 관련기관 5년이상 종사한 자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자
4. 사회복지담당국장, 보건소장
5.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제4조(위원명단 공개) 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

제8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9조(회의 등) ①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
3. 심의사항

4. 심의결과
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·전문가·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